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1, 11, 30,

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영교

1. 제안요지

가. 의안번호: 제1690호

나. 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다. 제출일자: 2021. 11. 16.

가. 회부일자: 2021. 11. 18.

2. 제안이유

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개관에 따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시설 이용 활성화와 이용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센터의 설치 및 기능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이용료 부과, 반환 및 감면내용 규정(안 제7조~제9조)
- 라. 위탁운영 및 지도·점검(안 제10조~제1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「영유아보육법」,「아동복지법」,

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, 별첨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1. 10. 7. ~ 10. 2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제정 취지

○ 본 제정안은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의 개관에 따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시설 이용활성화와 이용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12개의조문으로 구성됨

나. 조문별 검토내용

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
 -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기술하였고
-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
 - 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
-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
 - 이용대상, 이용시간 및 휴관일, 이용료에 대한 사항을

-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
 - 위탁운영과 지도·점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
 - 성동구, 특히 금호·옥수 지역은 최근 수년 사이 재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되어 타 권역 대비 인구 증가율이 높고 12세 이하 영유아를 둔 학부모 거주 비율 또한 높아금호·옥수 지역 내 영유아와 30~40대 젊은 학부모 등 온 가족이 함께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이 필요한 지역임
 - 영유아 중심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놀면서 가족이 함께 즐기고, 배우고,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성동맘 앤 키즈 복합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
 - 동 사업은 지상 4층, 1,295㎡ 규모로 지역수요를 기반으로 한 생활 인프라 조성으로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생활SOC 추진단, 전문가, 주민 등의 인력풀을 활용하여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주민 참여를 보장하였고 키즈 스튜디오, 각종 체험관 등이 포함된 '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'를 정식 명칭으로 지난 7월 1일 개관함에 따라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근거 및 이용 료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
 - 이에, 안 제3조에서 센터 설치의 근거와 위치를 규정하여 영유아 및 아동의 정서적, 육체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등을 명시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센터의 기능을 명시하여 악기를 통한 문화

예술 체험, 공동육아나눔을 위한 공간제공 및 품앗이 프로그램, 놀이 기반의 과학·미디어·예술체험관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

-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이용료 부과, 감면, 반환 규정을 마련하여 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시설 대관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하고 센터의 사정 등으로 운영이 불가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였으며
-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서 위탁운영 및 지도·점검 규정을 두어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

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영유아 및 아동의 정서적·육체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의 내용 및 대상 등에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조례안이라 판단되며, 센터 운영 시 문화예술체험을 기반으로 참여 주체인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체험을 주로 하는 프로그램 발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, 시설 운영ㆍ관리에 있어도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< 관계법규 >

붙임 1 「영유아보육법」

제4조(책임)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,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.

붙임 2 「아동복지법」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·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,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 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